

건축사예비종합문제집 건축법규 2차 정오표[2016.5.11.]

| 해당 페이지                | 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록 4-88페이지<br>139번 정답 | 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록 4-88페이지<br>141번 정답 | 개정법에 의해 정답 없음<br>(이론 내용 4-97p 참조) |

건축사예비종합문제집 **건축법규 1차 정오표**[2016.4.14]

| 해당 페이지  | 정 오 표 (파란색 글씨=수정된 부분)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4-8페이지<br>12기출 문제   | ㉠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다.<br>㉡ <b>벽을 목구조 방식으로 한다.</b><br>㉢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다.<br>㉣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이다.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4-9페이지<br>2 건축물   | 7. 특수구조건축물<br>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민구조 보,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</li> <li>•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</li> <li>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</li> </ul> <hr/> 8. 한옥<br>“한옥”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.<br>[참고]<br>“한옥”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·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.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4-13페이지<br>9 대수선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50%;">건축물의 부분 (주요구조부)</th> <th style="width:50%;">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.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</td> <td>외부형태·담장을 변경하는 것</td> </tr> <tr> <td>7. ① 6층 이상 건축물<br/>② 높이 22m이상 건축물<br/>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<br/>-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<br/>-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</td> <td>해당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30㎡ 이상 수선·변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건축물의 부분 (주요구조부) |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| 6.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| 외부형태·담장을 변경하는 것       | 7. ① 6층 이상 건축물<br>② 높이 22m이상 건축물<br>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<br>-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<br>-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|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30㎡ 이상 수선·변경 |
| 건축물의 부분 (주요구조부)   |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6.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 | 외부형태·담장을 변경하는 것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7. ① 6층 이상 건축물<br>② 높이 22m이상 건축물<br>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<br>-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<br>-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|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30㎡ 이상 수선·변경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4-14페이지<br>07기출 문제  | ㉠ 「대지」라 함은 <b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b> 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.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4-16페이지<br>11 용도분류<br>① 주요용도분류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style="width:50%;">9. 장례식장</td> <td>• 장례식장</td> </tr> <tr> <td>10. 숙박시설</td> <td>• 다중생활시설(500㎡ 이상 고시원)</td> </tr> <tr> <td>11. 야영시설</td> <td>• 300㎡ 미만 (관리동, 취사시설 등 포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| 9. 장례식장         | • 장례식장       | 10. 숙박시설         | • 다중생활시설(500㎡ 이상 고시원) | 11. 야영시설  | • 300㎡ 미만 (관리동, 취사시설 등 포함)                 |
| 9. 장례식장   | • 장례식장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10. 숙박시설  | • 다중생활시설(500㎡ 이상 고시원)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11. 야영시설  | • 300㎡ 미만 (관리동, 취사시설 등 포함)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4-27페이지<br>15번 문제   | ㉠ 한식 지붕틀 사용<br>㉡ <b>목구조 방식의 기둥</b><br>㉢ <b>목구조 방식의 벽</b><br>㉣ 전통양식 반영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4-41페이지<br>2 건축허가신청<br>(2) 허가신청서식의 범위   | <hr/> 1. 허가신청서<br><hr/> 2. 토지권리관계증명서<br><hr/> 3. 사전결정서<br><hr/> 4. 다음의 기본설계도서 ( <b>실내마감도제외</b> )<br><hr/>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


| 해당 페이지  | 정오표 (파란색 글씨-수정된 부분) 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-126페이지<br>34번 문제 정답   | 34. 다 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-143페이지<br><br>(2)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<br>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(최대<br>거리 : 6m 이하)  | 대상 건축물<br><br>1. 전용주거지역   |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<br><br>- 1m 이상 (한옥의 경우 ●처마선 : 0.5m 이상 2m 이하<br>●외벽선 : 1m 이상 2m 이하)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-150페이지<br><br>【4】 인접경계선의 인정   | <p>D1: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들이 있는 경우는 반대편 경계선<br/>D2: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로의 중심선</p> <p><math>D1 \geq 1.5m</math><br/><math>D2 \geq 1.5m</math><br/><math>D3 \geq h \times \frac{1}{2}</math></p>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-153페이지<br>9번 문제 정답  | 9. 라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-197페이지<br><br>2 건축위원회의 조직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96 990 687 1039">구 분</th> <th data-bbox="687 990 1066 1039">중앙건축위원회</th> <th data-bbox="1066 990 1453 1039">지방건축위원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96 1039 687 1122">1. 설치</td> <td data-bbox="687 1039 1066 1122">● 국토교통부</td> <td data-bbox="1066 1039 1453 1122">●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자치구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96 1122 687 1223">2. 위원</td> <td data-bbox="687 1122 1066 1223">● 70인 이내(위원장 포함)</td> <td data-bbox="1066 1122 1453 1223">● 25명 이상 150명 이하(위원장 포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 |   | 구 분     | 중앙건축위원회 | 지방건축위원회   | 1. 설치   | ● 국토교통부 | ●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자치구 | 2. 위원 | ● 70인 이내(위원장 포함) | ● 25명 이상 150명 이하(위원장 포함) |
| 구 분   | 중앙건축위원회   | 지방건축위원회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설치   | ● 국토교통부   | ●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자치구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위원   | ● 70인 이내(위원장 포함)  | ● 25명 이상 150명 이하(위원장 포함)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건축위원회 심의<br>【1】 심의사항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96 1229 948 1279">중앙건축위원회</th> <th data-bbox="948 1229 1453 1279">지방건축위원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96 1279 948 164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법 및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법 및 시행령의 재정,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948 1279 1453 164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건축조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<del>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del> &lt;삭제&gt;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  | 중앙건축위원회 | 지방건축위원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법 및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법 및 시행령의 재정,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건축조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<del>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del> &lt;삭제&gt;</li> </ul>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앙건축위원회   | 지방건축위원회 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법 및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법 및 시행령의 재정,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건축조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<del>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del> &lt;삭제&gt;</li> </ul> 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-199페이지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del>1. 미관지구내 건축물 &lt;삭제&gt;</del></li> <li>2.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</li> <li>3. 다른 법률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</li> <li>4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li> </ol> 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-248페이지<br><br>7.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| 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축제한, 건폐율, 용적률에 대한 적용기준은 각각의 지역제한을 적용하되 걸쳐진 면적이 330m <sup>2</sup> (상업지역에서 도로에 띠모양으로 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660m <sup>2</sup> )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.   |   |      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

| 해당 페이지                      | 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39번 문제 정답                  | 139. ㉔   |
| [부록] 4-92페이지<br>157번 문제 해설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철거신고 : 철거예정일 <b>3일전</b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[부록] 4-117페이지<br>131번 문제    | ㉔ 목구조 방식으로 벽을 축조한다.  |
| 131번 문제 해설                  |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<del>한식기와, 벚짚, 목재,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</del>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<삭제> |
| [부록] 4-146페이지<br>144번 문제    | ㉠ <b>피성년후견인</b><br>㉡ <b>피한정후견인</b>   |
| [부록] 4-147페이지<br>148번 문제 해설 | <hr/>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<br><hr/> <b>2. <u>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</u></b> <hr/>           |
| [부록] 4-210페이지<br>149번 문제    | ㉔ 주차전용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복합하여 사용할 수 <b>없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